

# 회의록

---

## [외교통상위원회] 상임위원회3

안건명: 입법청원안 #2 — 김지호 의원

회의일시: 2024년 09월 07일

회의 참석자 (가나다순): 강다영 멘토, 김단아 의원, 김보민 멘토, 김지수 의원, 김지호 의원, 이지안 의원, 정석원 의원 및 홍주원 의원

### [수정 제안]

이지안 의원:

입법청원안 good → 해결책 및 영향 outline good → 입법청원안 PASS

“해당 입법청원안을 통해서 재외국민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더욱 확실한 보호를 받을수 있고, 재외국민이 정신적 트라우마나 장애를 겪게 될 경우 이것을 예방하는데에 힘을쓰거나, 치료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이 더욱 확립될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재외국민들분들중 청소년, 노인과 같은 계층은 정신 건강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위 수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명시할 수 있습니다.”

김단아 의원:

- 저번 입법청원안 관련
-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나 거절당했다
- 우려의 목소리

정석원 의원:

- 정신적 건강에 대한 손해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할 듯 — 생명 등 신체적 피해: 눈으로도 볼 수 있음/정신적 피해: 측정하는데 있음)

홍주원 의원:

-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위해 국제적 지원이 더욱 확립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는데 어떠한 이유로 국제적 지원이 확립되는지에 대한 의문점

김지호 의원 (follow-up 1):

-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민이 지원을 받을수있게끔 정부가 조치를 취함

홍주원 의원 (follow-up 1):

- “그 다른 나라에서 의료지원이라는 법안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...”

김지호 의원 (follow-up 2):

- 바꾸는 것 X
- 재회 국민들이 살고있는 나라/어려움을 겪고있는 나라 → funding

- “자금을 도달해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병원비나 의료 접근성 높일수있는 방안 확립되지 않을까...”
- “차근차근 개선이 되지 않을까...”

홍주원 의원 (follow-up 2):

- 그런 방안이 확립이 될려면 상대방쪽의 나라와의 협약 또한 필요

김단아 의원:

- 정신적 손해 및 피해 → 구체적 설명 필요

김지수 의원:

- 타 의원님들 의견과 동의
- 정신적 피해 부분 수정

Q. 김지수 의원: 혹시 영사조력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예시 요청

A. 김지호 의원: 국민의 권리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형태  
재산적 피해 보장 (비용 및 복지 보장)

- PTSD 부분 넓혀나가서 작성
- Therapy 지원

김지호 의원:

-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게 되면
- “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치료를 받으면 그 나라의 회사나 그 부분에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다” →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님 → 제안 및 생각 유무?

김보민 멘토:

- 제2조 2항 -> 개정안 부분
-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님
- 정신적 부분으로 바뀌진 않을것임
- 제10조 3항)
  -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focus
- 제11조/제12조/제13조/제14조
- 우려) 정신적 부분 관련 지원
- 긴급하고 국가가 진짜 필요해서 조력한다는 느낌 剛
- 제19조) 금전적 지원: 경비 지원
- 재외국민/자신의 힘으로 -> 긴급하게 보장한다
- “재외국민 → 법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조금 평하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...”
- \*\*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 찾아보기\*\*
- 타 의원님들에게도 영사조력법에 관해 재정하는 것이 경각심을 줄 수 있음
- 정신적 피해에 몰두 → 법률적으로 효과 있을까?
- 다른 측면에서 영사조력법을 개정하자
- 참고문헌: [감금됐는데 “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”...한국 대사관 맞나? &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](#)

영사조력법

Q. 김지호 의원: 아예 명시되지 않는다? 잘 지켜지지 않는다 altho 명시됨 explicitly?

A. 김보민 멘토:

- 제12조) “공정한 수사 요청”
- 조력 제공해야함
- 지켜지지 않은 상황

A. 강다영 멘토:

- 전체적인 맥락은 김보민 멘토와 비슷
- 우려되는 부작용 (생명이나 신체 등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?)
-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
- 정신적 공감?
- 어떤사람한테는 \_이만큼\_, while others \_이만큼\_의 피해
- 정신적 - 추상적/모호함
- 법적측면에서 문제
- 법 조문을 보면 →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 포함 (조항)
- 필요성에서 의문이 듦
- improvement) 베트남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.
-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보호받지 못함
- 뇌출혈) 치료받지 못함
-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3장의 제10조부터 나오는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부분에 련 (사망 및 실종) — 법률로 규정되어있으나, 효력 발휘하고있지 못함
- 개정 발휘하기

강다영 멘토:

- 대통령 부분 건드릴 수 없다면, 위임한 부분이 있다면 법조항에 없는 부분에 추가하는 방식 좋겠다

隨 멘토님들의 의견:

- “정의” 보단 “영사조력법의 제3장의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”의 내용 주목
- 조력을 제공해야한다
-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 中
- 제대로된 처벌 및 조사 있었다면 이런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 — 처벌에서 부족한 것
-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 영사조력 문제 심각
- 동남아시아 (태국, 베트남, 필리핀 등) 위주로 조사 (링크참고) — 법안 준비하기 편할 것
- 제10조부터 제19조:

이지안 의원:

-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, 애매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, 한 가지에 focus하는 것이 better  
(→ 결론: 포괄적 < 한 가지 중점)

김지호 의원:

- 작성한 청원안 22일까지 제출 필요
- 실질적으로 9/14 미팅, 但 그 전에 더 많은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 — 소규모라도 진행 (위원장, 간사, 멘토분들)
- 제14조) 영사조력에 집중
- 병원오려고 한국왔는데 몇번가고 치료받았다 — 계속 지속되는 상황 X 일시적 O  
→ 어떻게 해서 입법청원안에 담는다 - 가능함 유무

김보민 멘토:

- 의료 파업 부분 다룰 수 없음
- 대처에 focus (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)

강다영 멘토:

- 영상: 대사관이 할 역할 X
- 의료파업 < 문제 인지

김보민 멘토:

- 대사관 측에서 연락한 이유) 서비스 제공해달라고 요청함
- 외국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
- 도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최선의 도움
- 피해자 돌보기 不可能 & 번역/통역 서비스 可能 (잘 이루어지지 않았다)

Q. 김지호 의원:

- 처벌 관련 조항
- 나라/대사관에서 문제
-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?

A. 강다영 멘토:

- 조사 시간 필요 (지금 당장, 진전 不可能)
- 소규모 회의\_한국인 여행객들
- 영사관이 조력을 못하는 부분 고민 필요
- \_어떠한\_부분\_개정 필요 (A... B... C...)
- 조사) 법률/체계적 부분서 문제 유무?
- 조사) 법률: 헌법의 대원칙 부분 유무?

A. 김보민 멘토:

- 급박하게 바뀌었으므로 의견 모아서 하면 좋을 듯

A. 김지호 의원:

- 의견 있으면 독방에 공지
- 세부적인 일정 잡기

Q. 김단아 의원: 업무팀 어떻게 따로따로 분배?

A. 김보민 멘토:

- 입법청원안 작성시 팀 구성
- 질의응답 답변 팀 분배

김지호 의원:

- 주제 정하기 于先